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회칙

제정 2015.01.15.

개정 2019.02.27.

전부개정 2023.06.12.

##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라 하며 별칭은 문화나비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평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칭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후원하고 부평구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며, 후원회원들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부평구 문화발전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재단의 공연·전시활동 및 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2. 부평구민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각종 문화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
3.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관련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본회의 사업에 동참할 뜻으로 재단에 기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포함)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별로 구분한다.

1. 개인·법인의 경우 해누리, 달누리, 꽃누리, 별누리, 구름 등급
2. 개인의 경우 뽕, 가람, 바람 등급
3. 회원의 등급은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누적된 기부금액이 상위 등급의 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② 회원 등급의 기준이 되는 기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누리 : 5천만원 이상
2. 달누리 : 2천만원 이상
3. 꽃누리 : 1천만원 이상
4. 별누리 : 5백만원 이상
5. 구름 : 3백만원 이상
6. 뽕 : 1백만원 이상
7. 가람 : 50만원 이상
8. 바람 : 50만원 미만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등급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의 요청 또는 사망하는 경우 회원의 권리는 상실된다.

③ 2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가 상실되더라도 재단 후원 명단에는 포함된다.

**제9조(회원의 포상)**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이내
3. 총무 1인

####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내 추가 선출된 임원의 경우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장)**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 내에서 입후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총무)** 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재원을 관리 및 집행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 및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장 집 행 기 구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의 선임
2. 본회 회원이 운영위원회에 가입 의사를 전달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운영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의 사임 의사 표명
  2. 운영위원이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였거나 운영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운영위원회가 해임·의결할 경우

**제17조(운영위원회 회비)** ① 총무는 운영위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② 회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부평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 결과 및 기부금 집행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가입 승인 및 제명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재단과 협의하는 회원 예우 사항
7. 제21조항에 대한 예산 및 결산

② 운영위원회는 재단의 기부금 사업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홀수월별로 연 6회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 까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의 판단으로 서면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 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국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기부금 모금 관련 보고
2. 기부금 사업 운영 및 결과 보고
3. 본회 회원 관리
4.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사무국은 업무 총괄할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재단 내 본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은 업무 실무자를 둘 수 있으며, 재단 내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 5장 재 정

**제2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비
2. 회원들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찬조금
3. 제5조에 따른 기타수익금

**제22조(재원의 운용과 관리)** ① 본회의 재원은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재원의 관리 및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6장 보 칙

**제27조(본회의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에 기증한다.

**제28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없는 사항 및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후원회 최초의 사업연도는 설립일로 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회칙의 시행당시 후원회 설립을 위하여 설립받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받기인의 기명날인)**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회칙을 작성하고 [별지 3]와 같이 설립받기인이 기명날인 한다.

## 부 칙<2023. 06. 12.>

이 회칙은 2023. 06. 13. 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본회 회칙은 폐기한다.